

서울특별시

우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 전화 (02) 731-6391-4 / 전송 731-6795

문서번호 주개 58533 - 1845
 시행일자 1993. 8. 2.
 (경유)
 수신 내부결재
 참조

취급		시 장
보존	정순구	영 10
주택국장	전결	
주택개발과장	[인]	
개발2계장	[인]	
기안	정순구	

법무담당관 심사필
(고시안심사)



제목 연희제1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1. 건설부고시 제967호(90.10.13)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92 - 26호(92.1.29.)로 개선계획수립된 연희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관할구청장으로 부터 지구경계에 걸쳐있는 노후블랑주택의 편입과 도로의 연결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요청이 있어 관련부서 협의하고 내용검토한 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제3조제4항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구변경지정하고 동법시행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하오니 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구지정변경내역

지구명	위 치	면 적 (m ²)			비 고
		기 정	변 경	증 감	
연희1	서대문구 연희동 520번지일대	15,652	16,808	증1,156	지구일부추가

- 첨부 1. 고시(안) 1부
 2. 지구변경지정도면 1부
 3. 관련부서 협의공문(도시계획과,공원과,주택기획과).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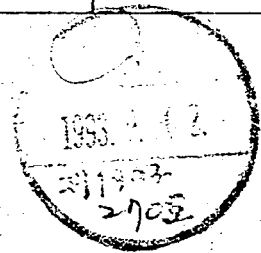
(제 2 안)

수신 총무처장관

제목 관보게재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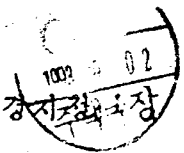
1. 아래와 같이 관보게재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원본대조필

나. 게재건명 : 연희제1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다. 법적근거 :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제4항, 동법시행령 제12조.

첨부 1. 고시문 사본 2부. 끝.

서울특별시

(제 3 안)

수신 건설부장관

참조 주택개발과장

제목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보고

1. 건설부고시 제967호(90.10.13)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92 - 26호(92.1.29)호로 개선계획수립된 우리시 연희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및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지구변경지정 도면 1부. 끝.

서울특별시

(제 4 안)

수신 서대문구청장

참조 주택과장

제목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통보

1. 주택58533 - 1951호(93.8.12)와 관련임.

2. 위호로 변경지정 요청한 연희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제3조와 동법시행령제3조제4항및 동법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및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관계도서 사본을 구청관련부서및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개선계획변경수립등 사업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기바람.

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지구변경지정 도면 1부. 끝.

원근대 조

서울특별시

(제 5 안)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통보

1. 건설부고시 제967호(90.10.13)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92-26호(92.1.29)로 개선계획수립된 연희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을 위한 임시조치법제3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및 제12조의규정에 의거 변경지정및 고시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변경지정 도면 1부. 끝.

주 택 개 량 과 장

수신처: 도시계획과장, 서울계획과장, 광역시청

원본대조필

고시 심사 (19) 13. P. 1 제 253 호
담당자 김희식 차장명두담국
<i>Mi</i> <i>se</i> <i>국</i>

연희제1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1. 건설부고시 제967호(1992.10.13)로 지구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92-26호(92.1.29)로 개선계획수립된 우리시 연희제1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1%이상}임시조치법 제3조와 ^{1%이상}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1%이상}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 사본을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 및 서대문구청 주택과 도시정비과 및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3년 8월 8일

서울특별시장

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변경지정 조서

지구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증.감	
연희제1	서대문구 연희동 520번지일대	15,652	16,808	증1,156	지구일부추가

- 나. 관계도서 :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택개량과와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주택과, 도시정비과 및 해당동사무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습니다.

권 본 대 조 필

주택국장

신기동신시가지지구지정도

도별시 고시 제 1993-110
1993년 9월 일



지구추가
A = 1,156 m²

- 범례
- 기존 시군계
 - 변경 시군계

(2)